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35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김위상 · 김선교 · 신성범
김성원 · 이종욱 · 김은혜
김승수 · 박성훈 · 이인선
김형동 · 윤상현 · 송석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채불은 단순한 기업 내부의 계약 위반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과 사회보장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병폐로서,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되,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청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의 법인사업주가 형식적인 법인격을 방패로 삼아 구상채무와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있고, 그 결과 법인의 재산만으로는 대지급의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대지급금이 사실상 ‘기업의 책임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구조’로 전락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유용 · 횡령 · 은닉 등 변제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행위를 한 무한책임사원, 과

점주주 및 그 밖의 실질적인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법인격 뒤에 숨은 실질적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징수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137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금의 납부기한 만료일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변제금의 원인이 되는 임금등의 미지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법인의 이사회,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의 결의

나. 법인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사원 또는 주요 임원의 선임

다. 법인의 사업 계획, 예산 편성, 재산의 처분 등 주요 경영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와 변제금의 원인이 되는 임금등의 미지급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재산을 유용·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여 법인을 무자력 상태로 만든 경우
2. 법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하여 변제금 납부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3. 자금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등의 지급을 후순위로 미루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4. 임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137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1137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u>제8조의3(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u> <u>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u> <u>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금</u> <u>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u> <u>는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u> <u>변제금의 납부기한 만료일 당</u> <u>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자로서 변제금의</u> <u>원인이 되는 임금등의 미지급</u> <u>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u> <u>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u> <u>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u> <u>제1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u> <u>에는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u> <u>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u> <u>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u> <u>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u> <u>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u> <u>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u> <u>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u> <u>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u>

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무한
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
적인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가. 법인의 이사회,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의 결의

나. 법인의 대표이사, 업무집
행사원 또는 주요 임원의
선임

다. 법인의 사업 계획, 예산
편성, 재산의 처분 등 주
요 경영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와
변제금의 원인이 되는 임금등
의 미지급에 상당한 인과관계
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재산을 유용·횡령하
거나 부당하게 처분하여 법인
을 무자력 상태로 만든 경우

- | | |
|--|---|
| | <p><u>2. 법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u>
<u>제3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하여</u>
<u>변제금 납부를 불가능하게 하</u>
<u>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u>
<u>우</u></p> <p><u>3. 자금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u>
<u>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u>
<u>임금등의 지급을 후순위로 미</u>
<u>루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u>
<u>우</u></p> <p><u>4. 임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자</u>
<u>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u>
<u>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u></p> <p><u>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u>
<u>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경우</u></p> |
|--|---|